

정대리인, 한정
|
후견인 또는 | 생년월일 |
|
성년후견인 |
|
동의 | 주소

재외공관(영사관) · 수감기관(교도관) · 관계공무원 | 확인

위 신청인의 [] 인감보호 신청
사실을 확인합니다.
[] 인감보호 해지신청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 한정후견인 · 성년후견인
동의
년 월 일

[] 재외공관(영사관) (서명
또는 인)
[] 수감기관(교도관)
(서명 또는 인)
[] 읍면동 관계공무원 (서명 또는 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인감보호 또는 인감
보호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시·군·구·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210mm × 297mm [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

(뒤 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또는 수감자의 인감보호(보호해지)를 신청하기 위하여 증명청을 방문하는 대리인은 반드시 주민등록증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여권번호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인감보호(보호해지) 신청은 본인의 인감을 보호(보호해지)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의 발급대상을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하는 내용을 아래 예시와 같이 인감보호(보호해지) 신청내용란에 적어 제출하면 됩니다.

[기재 예시]

?? 본인 외 발급 금지

?? 본인, 처(○○○: 주민등록번호) 외 발급 금지

?? 본인, 처(○○○: 주민등록번호), 모(○○○: 주민등록번호) 외 발급 금지

?? 주소지 시·군·구(읍·면·동)에서만 발급하고 그 외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에서는 발급 금지

?? 그 밖에 인감보호나 인감의 보호해지에 필요한 내용

4. 엄지손가락지문을 날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지문을 날인하며, 지문은 선명하고 깨끗하게 날인하여야 합니다.

5.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수감자가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 또는 수감기관 해당사항란에 [√]표시를 하

고,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재외공관(영사관)

나. 수감자: 수감기관(교도관)

6. 인감의 보호신청이나 보호해지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사항란에 [√]표시를 한 후 제출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 피

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성년후견인 동의란에 [√]표시를 함께 하

여야 합니다.

7. 읍면동 관계공무원 확인란은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인·피성년후견인의 동 	1.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한정후견 의 추가
수감자인 경우에는 재외 인감보호 (해지)신청 ▲	2.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신청 공관, 수감기관 확인 수리
 ▼	

